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2-61호

2022년 하반기 신규직원 축산물품질평가직(6급) 채용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축산물등급판정업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사업, 축산물유통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2022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축산물품질평가직(6급)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내용

직군(직급)	구분	인원	업무내용[붙임1 참조]
축산물품질평가직(6급)	신입	16명	• 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유통사업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축산물품질평가직(6급)	신입, 보훈	1명	

2 근무조건

구분	내용
임용일(예정)	2022. 12. 12.(월)
근로형태	정규직(수습 3개월 후 정식임용)
근무지	전국
근무시간	전일제(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
보수 및 복리후생	사규에 따름(신규직원 초임은 알리오(ALIO) 공시자료 참고)

- ※ 1. 임용일은 경력자의 경우 행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수습기간 이후 연고지 및 부서별 인력수급현황을 고려하여 근무지 배치
 3. 근무시간은 9:00~18:00이며, 근무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보수 및 복리후생비에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효도휴가비 포함, 인센티브 성과급은 별도

구분	내용																						
응시 자격	공통	「축산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단, 기관 정년에 도달하는 자 제외) ('23년 2월 졸업예정자 응시 가능, '22년 12월 12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외국어능력 기준 점수 이상인 자																					
		〈외국어능력 종류 및 기준점수표〉																					
		<table><tr><th colspan="4">영어</th><th>일본어</th><th>중국어</th></tr><tr><td>TOEIC</td><td>TOEFL(iBT)</td><td>New TEPS</td><td>G-TELP (Level 2)</td><td>JPT</td><td>新HSK 5급</td></tr><tr><td>700점</td><td>80점</td><td>265점</td><td>76점</td><td>700점</td><td>180점</td></tr></table>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2020.10.01)부터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2.10.14.)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 시험 성적이 위 기준 성적 이상인 자						영어				일본어	중국어	TOEIC	TOEFL(iBT)	New TEPS	G-TELP (Level 2)	JPT	新HSK 5급	700점	80점	265점	76점
영어				일본어	중국어																		
TOEIC	TOEFL(iBT)	New TEPS	G-TELP (Level 2)	JPT	新HSK 5급																		
700점	80점	265점	76점	700점	180점																		
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결격사유	「인사규정」제22조 및 「직원채용 업무지침」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붙임2 참조]																						

4

전형절차 개요

① 서류전형	② 필기전형		③ 면접전형	④ 최종합격자 결정	⑤ 임용적격여부 조회
합격배수 : 20배수	합격 배수	2배수 보훈_4배수	• 직무수행능력 기반 상황·경험 면접 (100점)	합격배수 : 1배수	적격자 선발
• 입사지원서(적·부) • 자기소개서(100점)	• 인성검사(적·부) • 직업기초능력(100) • 직무수행능력(100) - 축산학개론 - 식육학 - 축산식품관련 미생물학			• 필기전형의 직무수행능력평가 (50%) + 면접(50%)	• 비위면직자, 결격사유 조회 • 채용신체검사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채용상담 안내]

- 일시 : 연중 상시운영
- 방법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접속
- 내용 : 2022 축산물품질평가원 신규직원 채용 전반 Q&A 답변
- 경로 : 카카오톡 실행 → 채팅 탭 내 우측 상단 말풍선 → '새로운 채팅' 화면 → 우측 상단 '오픈 채팅' → '2022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정보 공유방' 검색 후 채팅방 입장

5

전형절차 세부사항

전형	평가기준 및 배점	선발배수	합격자 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	• 입사지원서(적·부) • 자기소개서(100점)	20배수	• 응시자격 적격자 중 자기소개서 평가 4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서류전형 부적격 처리함
필기	• 인성검사(적·부) •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직무수행능력평가(100점) - 축산학개론 - 식육학 - 축산식품관련 미생물학	2배수	• 인성검사 적격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40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별 40점 이상, 3개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4배수 (보훈)	
면접	• 직무수행능력 기반 상황·경험 면접(100점)	-	• 면접평점 60점 이상인 자
최종 합격자 결정	• 필기전형의 직무수행능력평가(50%) + 면접(50%)	선발인원 1배수	• 직무수행능력평가와 면접결과를 50 : 50 으로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①~⑤ 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순) ③ 지역인재(이전지역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순) ④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자(직무수행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순) ⑤ 서류심사(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은 자
임용적격 여부 조회	• 비위면직자, 결격사유 조회 • 채용신체검사	적·부	• 적격자 선발 ※ 색각이상자는 신체검사 합격판정을 받았더라도 부적격

-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면접전형 참여 포기자 발생 시 필기전형(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 순 최대 5순위까지 예비합격자를 선정(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락자 제외)
- * (임용 차순위자)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 차순위자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 전형별 세부 평가요소

구분		내용
필기전형	인성검사	태도,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등의 인성전반 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직무수행능력평가	축산학개론, 식육학, 축산식품관련 미생물학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기반의 경험·상황면접으로 직무 및 조직적합도 평가

- ※ 1. 인성검사 문항 수는 출제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100~400문항)
 2. 직업기초능력평가 25문항, 직무수행능력평가는 75문항(과목별 25문항)

6

가점 및 우대사항

□ 서류전형 가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사회 형평 적 인 력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법에 따름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경증:만점의 5% 중증:만점의 7%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만점의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이전지역인재	최종학력 소재지가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인 자	만점의 5% 또는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자 격 증	공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만점의 2%
		IT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만점의 3%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만점의 1%
	직무	축산기사	만점의 5%
직무경험		축산물품질평가원 체험형 청년인턴 ※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일경험 수련생), 현장실습생 제외	우수인턴 만점의 5%
			수료자 만점의 3%
		대학생축산물품질평가대회 입상자 ※ 2019년 대학생 가치드림 프로그램 입상자 포함	대상 만점의 3%
			최우수 이하 만점의 1%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학생 서포터즈 ※ 2020년도 이후 입상자 및 수료자 대상	입상자 만점의 3%
			수료자 만점의 1%

□ 필기전형 가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사회 형평적인력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법에 따름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경증:만점의 5% 중증:만점의 7%
	이전지역인재	최종학력 소재지가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인 자	채용목표제만 적용 (보훈전형 제외)

□ 면접전형 가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사회 형평적인력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법에 따름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경증:만점의 5% 중증:만점의 7%
	경력단절여성	임신·출산·육아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현재 무직)	만점의 3%
	이전지역인재	최종학력 소재지가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인 자	채용목표제만 적용 (보훈전형 제외)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우대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우 대	①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동점자 우대 (순서 : ①~⑤)
	②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순)	
	③지역 인재	이전지역 최종학력 소재지가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 인 자 비수도권 지방(비수도권)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재학·휴학 포함)	
	④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직무수행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순)	(이전지역, 비수도권 순)	
	⑤서류심사(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은 자		

〈가점 부여 상세 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법」 제31조 및 동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용함
- 이전지역인재 가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직원채용 업무지침」에 따라 적용함
- 사회형평적 인력 가점은 대상별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최대점수(가점) 1개만 적용
- IT 및 직무 자격 가점은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하며, 자격증 가점 총점은 만점의 10%
- 직무경험 가점은 항목별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
-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의 경우 채용공고상의 근무기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사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7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접수	(공고) 9. 29.(목) ~ 10. 14.(금) 14시까지 (접수) 10. 6.(목) ~ 10. 14.(금) 14시까지	• 공고 16일, 접수 9일간
서류 합격자 발표	10. 21.(금)	-
증빙서류 제출	10. 21.(금) ~ 10. 26.(수) 14시까지	• 별도공지
필기전형	10. 29.(토)	• 필기장소 : 별도공지
필기 합격자 발표	11. 9.(수)	-
면접	11. 17.(목) ~ 11. 18.(금)	• 면접장소 : 별도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11. 28.(월)	-
신체검사 및 기초서류제출	11. 28.(월) ~ 12. 1.(목) 14시까지	• 신체검사는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하며 서류는 채용홈페이지 업로드
임용	12. 12.(월)	• 경력자의 경우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방식)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홈페이지 조회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과 장소 및 채용방식은 국가적 상황 및 천재지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안내

전형단계	대상	제출서류	제출대상 및 용도	비고
서류전형	공통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서류심사용	• 온라인 접수
증빙 서류제출	필수	• 외국어 취득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증명서(보훈전형지원자)	• 지원요건 확인	• 서류제출 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 장애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저소득층 대상자	
		• 다문화가족(국적취득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 경력단절여성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단절여성 대상자	
		•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이전지역 인재 우대사항 입력자	
		• 지방(비수도권)대학 재학·졸업(예정) 증명서	• 비수도권 인재 우대사항 입력자	
		• 경력증명서	• 경력사항 입력자	
결격사유 조회	공통	• 자격증 등(사본)	• 자격증 입력자	•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 확인	
		• 주민등록등본	• 비위면직자 조회	
		• 기본증명서(상세) • 채용신체검사서	• 결격사유 확인	

1.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해당 증명서는 반드시 정부 24(www.gov.kr)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하며, 공고일(2022. 10. 14. 포함)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므로 유의
2.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제출하며, 공고일(2022. 10. 14. 포함)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 (방문발급) 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
 - * (온라인발급) 장애인직업능력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
3.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일(2022. 10. 14. 포함) 이후 발급하여 제출(문서확인번호 16 자리 필요)하여 제출

9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안내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일체 금지

※ **경험 및 경력사항 기재 시 타 회사명 기재 가능하며 학교명은 기재 불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블라인드 위반 검토사항〉

- 불성실 기재(비속어 사용, 동일답변 반복, 회사명 오기입, 분량부족(50자 미만), 블라인드 위반) 확인
- (블라인드 위반) 개인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의 편견요소) 기입
 - ex) • **성별** : 군수병·전경·행정병·조리병으로 복무하며 / 아내와 함께 생활하며 / 형으로서 /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 다른 중대원에게 / 장남으로 태어나 / 여학우 부장이 라는/ 최초 여성 직원이 되어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
 - **출신지역** : ~대구에서 태어나 /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 ~세종시 동아리 등
 - **출신학교** : ~고려대학교 장학금 수상 / ~연세대학교 회장 / ~서울대학교 재학 / ~조교 / 축평대학교LINC사업단 / ~교직원 / 축평대학교 학생연구원 등
 - **연령** : ~2019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 ※ 부득이 기재가 필요할 시, 00대학교 마케팅동아리와 같이 '0000' 형식으로 기재
- 현주소, 메일주소 작성 시 학교명 및 직장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하는 서류는 응시자격 및 가점사항 확인용이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10 채용비리 구제방법 및 이의신청 안내

□ 피해자 구제방법

-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 과락,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

□ 이의신청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이의신청메뉴에 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후 답변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1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 (청구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 (청구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이 되지 않은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9]를 작성하여 메일(recruit@ekape.or.kr)로 신청

* 채용서류 반환 신청서 접수 시 14일 이내 송부

- (청구대상) 전자서류를 제외한 제출 서류
- (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12

기타

-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 지원마감 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니 접수기간 내 미리 지원서 작성 및 최종 제출을 바람(접수마감시간 연장 없음)
- ❑ 채용공고는 우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함
- ❑ 동일 공고기간 내 진행 중인 다른 분야 채용에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탈락처리
- ❑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사규정」제22조, 「직원채용 업무지침」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채용 업무지침」제22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임용 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개발처(☎ 044-410-7034~6)로 문의

[붙임 1] 직무기술서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서 - 축산물품질평가직

채용분야		축산물품질평가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21. 식품가공	01. 식품가공	01. 식품가공	03. 축산식품가공
		02. 식품저장	03. 축산식품저장
24. 농림어업	02. 축산	01. 축산자원개발	01. 사료생산 02. 종축
		02. 사육관리	01. 젖소사육 02. 돼지사육 03. 가금사육 04. 한우사육
02.경영·회계·사무	01.기획사무	03.마케팅	02.고객관리
기관 주요사업	○ 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유통사업, 연구·조사, 정보화, 축산(물) 생산 컨설팅 및 지도교육·홍보, 국제협력,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등 기타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과 부대사업		
직무수행 내용	○ (축산식품저장) 축산물(소, 돼지, 가금류, 계란) 등급판정 및 등급판정결과의 피드백·컨설팅 제공, 등급판정 관련 제도 및 기준 연구·조사, 등급판정인(印)과 관련 장비, 작업장 준수사항 등을 점검·관리하는 업무 ○ (축산식품가공) 축산물품질공정관리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지정심사 및 지정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위생관리 등) ○ (축산물이력제사업) 가축 및 축산물 이행주체(생산자, 유통업자) 관리, 이력 정보(소, 돼지, 가금산물)의 조사·검증, 생산·유통 현장 점검과 장비 등 관리 ○ (축산물유통사업)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 유통단계별 가격, 경로 등의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축산물유통사업 업무 ○ (축산자원개발 및 사육관리)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제도, 축산 관련 통계 등을 지도교육·홍보하는 업무 ○ (고객관리) 기관 인지도 및 제도 수용도 제고를 위해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대응·지원, 고객 요구사항 등을 대응·관리하는 업무 ○ (사무행정)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관리, 사무자동화 관리 운용 등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 ○ (연구개발)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기준 및 기술개발 ○ (국제협력사업 관리) 수원국(개발도상국)에 대한 축산물유통관리체계, 이력제, 등급제 교육으로 한국형 표준화 유도		
전형방법	○ 서류전형 → 필기전형(인성검사·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 면접전형 → 임용(수습3개월)		
일반요건	○ 공고문 참고		
필요지식	○ (축산식품저장·축산물이력제사업) 축산물 등급·이력제도와 관련 법령(축산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식, 축산전공 지식		

	○ (축산식품유통사업) 축산물의 유통흐름·가격 및 수출입 동향에 대한 지식, 기초 자료 조사를 위한 유통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지식 ○ (축산식품가공) 축산물의 품질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지식 ○ (축산자원개발 및 사육관리) 축종별 사양관리 방법, 축산경영, 관련 통계 활용 지식 ○ (고객관리) 고객 관계·심리·응대기술, 고객 데이터 관리, 고객요구 분석 ○ (사무행정) 문서기안 절차, 문서의 체계, 문서작성 규칙, 문서관리 규정, 조직도 이해, 보안 규정,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매뉴얼,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매뉴얼,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매뉴얼,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기본 회계지식, 회계규정, 회의에 사용되는 물품과 장비 운영매뉴얼, 직제규정, 사무기기운용 매뉴얼 ○ (연구개발) 각 축종별 사양관리, 도축 및 유통체계 등 전반지식 ○ (국제협력사업 관리) 국내외 공적자원개발사업(ODA) 이해
필요기술	○ (축산식품저장·축산물이력제사업) 축산물품질평가 및 관리 기술, 이력관리 기술 ○ (축산식품유통사업) 축산물의 가격 및 수출입 동향에 대한 정보입수 및 분석 기술 ○ (축산자원개발 및 사육관리) 정보수집 및 분석 기술, 고객 니즈에 맞는 컨설팅 항목 선정 능력, 컨설팅 내용 구조화 능력, 설득 기술 ○ (고객관리) 다양한 요구와 고객 형태 등에 맞는 응대 기술, 고객 니즈에 맞는 고객요구 분석, 소통 및 설득 기술, 문제 상황 분석 기술, 대응매뉴얼 개발 및 수정 능력 ○ (사무행정) 부서(팀)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 관리, 사무자동화 관리 운용 등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 ○ (연구개발)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기준 및 기술개발 ○ (국제협력사업 관리) 수원국(개발도상국)에 대한 축산물유통관리체계 이력제, 등급제 교육으로 한국형 표준화 유도
직무수행 태도	○ 공직자로서의 공공성, 법규 준수, 안전·위생·방역사항 준수, 민원인과의 적법관계 유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주인인식, 책임감, 청렴성, 협력적 태도
직업기초 능력	○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수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참고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학습모듈검색

[붙임2]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불이행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용하지 아니한다.

「직원채용 업무지침」 제13조(신체검사) ① 원장은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물품질평가직 지원자 중 색각이상자는 신체검사 합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1.>

[붙임3] 우대사항

1.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로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급받은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1.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급자의 친권인, 후견인 등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6.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상명대 천안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7. 이전지역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일부 발취)

가.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이전지역 학교의 세부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가.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나.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미전지역학교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8.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붙임5]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1. [자기개발능력] 최근 5년 동안에 귀하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귀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500자 내외)

* 다른사람과 차별화 된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작성

2. [문제해결능력]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십시오. (500자 내외)

3. [대인관계능력]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유지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500자 내외)

4. [조직이해능력] 우리 기관에 입사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른 사람과 차별화 된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작성해 주십시오. (500자 내외)

5. [직업윤리]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십시오. (500자 내외)

6. [경험 혹은 경력사항] (2,000자 내외)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력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내용, 소속조직이나 활동에서의 역할, 활동결과 등 작성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채용절차 진행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직원 채용을 위해 관계법령(「개인정보보호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최종학력, 경력, 이수한 교과과정,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채용절차 진행 및 채용 지원자격·우대사항 확인,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90일 (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내부 인사관리를 위해 준영구보유)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보훈 및 장애 관련 정보	채용절차 진행 및 채용 지원자격·우대사항 확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90일 (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내부 인사관리를 위해 준영구보유)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증명서 생성(발급)기관	이름, 생년월일, 학력, 경력,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진위여부 확인 소요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채용절차 진행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기] 서류심사

서류 심사표

수험번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입사지원서 심사		적격	부적격	사유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여부		적격	부적격 (불성실 기재)	사유
자기 소개 서	구 분		주요 관찰사항	평정점수
	일반 문 항	자기개발	○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행동증거의 구체성	/ 12점
		문제해결	○ 문제가 발생한 상황의 구체성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증거의 구체성	/ 12점
		대인관계	○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치관(생각) 또는 행동증거 표출의 구체성	/ 12점
		조직이해	○ 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한 동기와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12점
		직업윤리	○ 직장인으로서 직업윤리의 이해정도 및 본인의 가치관과 결부한 효과적인 표현여부	/ 12점
	경험 혹은 경력사항 기술	○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설명의 구체성, 역량의 정도, 지원한 직무와 연관하여 본인의 경험과 경력 효과적인 기술여부	/ 40점	
우대가점		○ 사회형평적인력 가점	/ 5~10점	
		○ 기타 가점	/ 15점 이내	
평가점수 합계				/ 125점

※ 평가점수기준표

구분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일반문항	12점	10점 이상	7~9점	4~6점	2~3점	2점 미만
경험 혹은 경력사항 기술	40점	32점 이상	23~31점	14~22점	5~13점	5점 미만

[붙임8] 면접시험 평가표

면접시험 평가표

수험번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구 분	주요 관찰사항		평정점수
용모·품행 및 성실성	○ 복장(머리, 옷매무새 등)은 단정한가? ○ 응답자세, 시선, 예의범절은 바른가? ○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가? ○ 상호존중과 배려에 관한 의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15점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침착성과 적극성을 겸비하고 있는가? ○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 15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의사표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는가? ○ 질문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가? ○ 주관이 뚜렷한가?		/ 15점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 지원분야에 대한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일반교양 및 상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15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 가치관이 우리기관의 업무와 일치하는가? ○ 우리기관에 대한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협동심과 사회성이 좋은가?		/ 20점
인성 및 적성	○ 인성 및 적성의 적절성은?		/ 20점
우대가점	○ 사회형평적 인력 가점		/ 3~10점
평가점수 합계			/ 110점

※ 평가점수기준표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배점(20점)	18점 이상	16~17점	14~15점	12~13점	12점 미만
배점(15점)	14점 이상	12~13점	10~11점	9점	9점 미만

[붙임9]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